



신용카드 『그린하이브리드』 개인회원 약관

본 약관은 그린하이브리드 체크카드약관에 귀속된 신용공여와 관련한 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시행일 : 2026.05.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그린하이브리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이 지칭하고 대금지급 및 그 밖에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유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카드는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제한)

- ①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등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족카드의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 ③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안내합니다.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4.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5. 가족카드 포인트 양도방법
 6.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의 카드사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7. 제6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실
 8.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정지·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정지·해지 조치를 할 경우 동의하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알립니다.
- ⑥ 카드사는 제26조에 따라 가족회원에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⑦ 본인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 (유료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료기간은 카드표면에 표시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남은 유료기간까지의 재발급을 허용합니다.
- ③ 카드사는 유료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가질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료카드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 대체 발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통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제지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의제지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료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가정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의제지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대체발급 시 기존상품과 대체상품의 차이(적립 및 할인 혜택, 이용조건 및 한도 등)
 3.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제지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법규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발송한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도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하는 카드사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며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신랄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료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종전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 이행을 계속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지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연회비 청구)

-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카드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별 등 분할납부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분할납부 1회 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3. 최초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변경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초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기간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날부터 연회비(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이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

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일전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에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 정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입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인,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지·종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입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인, 사망, 구속 등의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지·종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이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 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제4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휴먼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 최초 발급(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먼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먼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이용계약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먼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먼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구속도 통행로 지불 가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기 가능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먼카드
 3.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 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③ 제4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휴먼카드의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도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간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간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출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유통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본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할부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카드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결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결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국내 및 해외 사용 경우에도 발급된 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IC칩 비밀번호(PIN 번호)가 등 록되지 않은 카드의 이용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용제한)

- ① 체크카드와 결합된 카드의 신용공여 이용한도는 신규규약을 할 경우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청한 수 범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회원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금액이 체크카드 연결 계좌의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와 이윤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윤 대영계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카드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한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경우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충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윤대영계서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⑥ 3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예정일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윤대영계서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 카드는 이용한도를 이윤대영계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 응답서비스(ARS), 내선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부속영세서 등에 명시하고 이들을 발급할 경우 통지하여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 사용,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금,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 절차 및 상속인도 사용방법
- ③ 제2항의 경우 카드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유효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유효한도 내에서 정상하여 제공됩니다.
- ④ 카드는 이윤실적은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의 이윤실적-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재무상태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9항을 통해 통지 받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9항에 카드를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비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⑤ 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인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카드 출시된 시기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변경의 경우

⑥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문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의 변경일자부터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문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⑦ 카드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사용방법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윤대영계서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⑧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 ⑨ 카드는 카드해지 시 회원의 신택에 따라 마스틱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올림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⑪ 상속인용공과래 조화신청 등을 통해 카드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 카드 상품별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⑫ 카드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포인트 자동 사용(결제대금 차감)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⑬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회원이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는 포인트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금이 생성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에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료금용입금, 기타 금융 관계별 위법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2(전월실적 안내)

카드는 회원의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 및 전월실적 일정기준, 이에 포함·제외되는 항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문 앱(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윤대영계서서서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11조의3(카드 이용내역 표시)

카드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윤대영계서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원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2장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제12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용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3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1.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후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행위를 통한)을 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으로 의한 방식이 경우 본인인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용계약의 성립)

1.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카드는 이자를,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도 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3.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는 이자를,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본인확인요지)

1. 회원이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카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에 등록된 회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2. 회원과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이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며, 마목 및 사목의 방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 가.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원본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한 경우를 말한다)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우편(E-MAIL),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
 - 나.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직원이 영상통화(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사람이 회원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 및 요청 사항에 실제 얼굴 등을 촬영하여 영상이 증명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 시점마다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을 통해 회원의 영상과 회원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법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본인대면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하는 방법
 - 라.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회원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을 이체받거나, 카드사가 회원에게 소액을 출금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2. 회원이 신청에 카드에 등록된 생체정보와 회원이 제시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거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마치고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 신원정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저장한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
3. 공인인증서, 이이핀(-PIN), 휴대전화와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원확인 후 발급한 파일, 이이디-비밀번호, 전 화번호를 활용하는 방법
4.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장 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출금 정보를 조회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출금인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친제자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카드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 조치가 곤란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의와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의 금융거래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1. 카드는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져본 소득,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정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2. 카드는 제1항에 따른 정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데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의와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의 금융거래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은 카드사가 신청한 정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대출금 상환)

1.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가져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만기이후상환 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3. 원리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4. 가져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가져지기에)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5. 가져후 원리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가져지기에)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6. 만기일상환방식은 원금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7. 만기이후상환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며,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만기이후상환 방식 거래에서 상환합니다.

제18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연이자)

1. 정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 및 지급의 시기·방법에 관해 카드는 법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요건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는 이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9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1.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 제출을 끝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와 결과를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카드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상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4.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카드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신청, 심사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드립니다.

제20조(정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1.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정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1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정기카드대출(카드론)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한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2조(대출기간 연장)

1. 대출기간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는 개인신용평점, 연체정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대출금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23장 대금결제

제23조 (대금결제)

1. 회원은 카드를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카드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윤대영계서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3.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환됩니다.
 - * (거래미화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대도율
 - ** (거래미화액 ×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대도율
4. 회원은 예금잔액 및 신용한도도 결제금액보다 적어 결제할 때에도 카드이용대금을 결제 하지 못한 경우(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를 상실한 경우 또한, 결제일 다음날부터 연체일*까지 한편결제**로 연체일수를 신청하여 다음 계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 연체이자 상환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원제일 중 하루만 포함
 -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되지 않) ×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 + 최대3%, 법정최고금리이내) × 연체일수 / 365(윤년은 366)
5.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이자율'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카드는 원금이 5만원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이자 발생여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초이자(2개월) 유지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생법」제45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자율 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용금융 가계저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6. 회원은 연체하여 받은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권리와 관련하여 연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하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대금지급 기한외의 사유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이 결제금액을 연체할 경우 연체하여 받은 비용, 연체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9.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12.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는 회원이 초과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상환, 입금인과 회원명(카드)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13. 회원이 제12항에 따른 환급기간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다행이

제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대금명세서를 접수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용통,기상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서를 우편,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접수 받은 대신 직접 수시발행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 열람 가능, 이용대금명세서에 이력상 인터넷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용대금명세서 수시발행 선택사에도 이력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문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4조 (자동이체결제)

-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3조의 결제일의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 분식/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 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약정된 내역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금액유선승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 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거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5조 (기한이익의 상실)

- 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사실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90일간의 지연배상금 미부과)
 - 성인이 중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 결혼, 고령자,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회원에 대해 다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에서 정한 사유의 재확인 절차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회원에 대해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사면으로 변제, 일률적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한 경우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 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기한이 연장되어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른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된다.

제26조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한 채무 전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제6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7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 이용 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회원이 카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실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본인에 있는 금액의 잔치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도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내역,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일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차익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회원에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 가실로 카드등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원이 합리적으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정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허위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제29조 (위조·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위조된 카드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회전, 전신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직된 내용대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31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연락처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2조 (변경사항의 통지)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장 보칙

제33조 (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변경승인 등)

-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산·구조분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산·구조분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경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통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일 알려드립니다.
 - 카드사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금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카드사가 결제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하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다음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카드사의 사전통지,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통지상 회원에게 우편, 전화, 유선,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사실)
 - 이의제기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36조 (경과 조치)

-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11조 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를 제한 금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 제11조 제7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23조 제16항, 제23조 제17항 및 제35조 제5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7조의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 제11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3조의2 제2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제7조의4 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 제11조 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제20조 제2항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 제11조의3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제37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례 또는 일반 상관관례에 따릅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정한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취급약관

시행일 : 2021.04.30

제1조 (목적)

이 부속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 약관(그린하이브리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연회비 등)

체크카드와 일반형 신용공여가 부여된 카드의 연회비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재발급카드 등의 이용)

이 카드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화로,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상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 이의제시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가 갱신 대체·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0카드·패키지 전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4조 (이용한도의 특례)

카드사가 지정한 특정 승인건(통신요금, 보험료 등 자동이체카드, 철도·승차권 등 반환수수료 청구, 항공기 기내판매, 교통카드사용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용한도에 관계없이 승인된 거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금 연결제 기한)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그린하이브리드) 제23조 10항에 의한 연결제는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 일정)

회원은 카드사의 결제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카드사가 청구하는 카드대금을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사정으로 출금이체의 결제계좌를 변경할 경우에 회원은 체크카드 발급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체크카

- 드 발급 기관은 회원의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일 결제계좌 불일치로 인해 불능처리 된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④ 출금이체의 출금한도는 결제계좌의 출금한도(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까지로 하며 지정 출금이에 입금된 출금 수표는 제외합니다.
- ⑤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 순위에 따르도록 합니다.
- ⑥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결정되며, 카드사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출금일정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 ⑦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결제계좌에서의 출금은 카드사의 청구대로 체크카드 발급 기관에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카드사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제7조 (담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제 예제금 및 카드사가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경,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8조 (상계)

제7조(담연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음대금의 변경기한 도래, 표준약관 제14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제 예제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라 합니다)와 간의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합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설 대어(리스, 할부보증, 대출, 팩드론, 어음할인, 이자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충한 어음(수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외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리스료·할부보증·이자·할리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등은 채무자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정체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일없이 해소된다는 금융회사의 지시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응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벌금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벌금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채무자에게 불공리,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세가 발행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⑦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벌금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고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⑧ 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을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⑨ 제3항 및 제7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지의 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할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지의 지연배상금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⑩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약정이자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거래구대대출금리) 중 높은 것을 적용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부일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을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변위(현 26%)내에서 약정금리, 1년율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지(사설대여의 경우 내자로)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 제2 (청약의 철회)

-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 제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약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의 상환보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담보물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②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권은 인사집행법에 따른 임의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총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금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 =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인 경우
3. 공경시제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경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③ 임의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대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요청 동인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대업자의 정보
-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외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하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⑤ 연대보증인은 일부 내부위탁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통 거래의 미변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대응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채권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사정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외의 고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통 어음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채무변제무의)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기한이익의 상실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일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일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보통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이음교환상의 거래처지처분이 있는 때,
 5. 매입, 도포 기타의 사유로 자금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중징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면외 종사자가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 외국인의 결혼 및 면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담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기한이익의 상실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를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는 채무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금분할상환형식의 리스로 및 할부금 제유)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입된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금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일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함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경,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항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판정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산소외외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부적분발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약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보증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증 연체통보, 대위통보·대금지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부정보등 등록된 때

- ⑦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
- ⑧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상업)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담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설치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미납 또는 잔액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⑨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기간 내에 보증유인을 교체하지 아니할 때
- ⑩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⑪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 ⑫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대로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2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상실된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제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상실된다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의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의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권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보증인에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8조 제5항, 전항,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별 철회·항변권 인안)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약정서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간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어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한 어음인 기채음액에 의한 할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 또는 환매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 날 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 과 여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건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 등을 거쳐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과 여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한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한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차 등과 지면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의 송달 시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한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유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제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채인준인한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환회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의 의인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차, 할인료 등과 지면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유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제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정소는 그 거래당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청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정지일 때
 3. 고등·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만기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수취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수령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5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중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충당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상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차,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금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변제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의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몰처당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정한,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 부담·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사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정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정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취급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항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민법에는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차이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동정·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장·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생성·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예산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생성·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계속할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중단율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정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의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정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의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선언의 보수, 경영상황의 권력인척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권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예산거래준수의 위반)

- ① 금융회사는 국가정부는 금융사용자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예산한다. 예산만기, 금리 등 예산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예산한다·예산신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예산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한다, 예산인기, 금리 등 예산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실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융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날까지)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명치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린다.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착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당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입은 예산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요청(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사항에 대한 통지를 한 적이 아니하거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 약관에 타입은 예산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당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주소가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시행일 : 2024년 9월 15일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비씨카드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씨카드동행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비씨카드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납입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비카드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비카드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전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대출업무, 환입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비카드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선(이하 "외부주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응답장치,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를 허가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비카드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예치,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예치"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비카드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비카드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비카드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비카드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3. "가맹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20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추심시제"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시제에 따라 비카드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① 이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비카드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응답장치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카드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응답장치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비카드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비카드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카드의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일련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용시간)

- ① 비카드에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월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비카드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제8조(수수료)

- ① 비카드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비카드에는 수수료(율)를 고액이 확인될 수 있도록 영입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9조(추심시제의 출금 동의)

- ① 비카드에는 추심시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비카드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비카드가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비카드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를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비카드에 출금동의를 철회할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시제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비카드에 출금 동의를 철회할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거래의 제한)

- ① 비카드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카드에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카드에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비카드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비카드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비카드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비카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카드가 배상하기로 한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지급금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금이 끝난 때
- ② 비카드에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지의 철회 및 제한)

-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된 전자적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비카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를 철회 할 수 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시제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 비카드에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립상 비카드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피해선종후건고·파산정후건고·파멸정후건고나 이용자 또는 비카드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비카드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카드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비카드에는 정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비카드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비카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비카드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취소하여야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비카드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1. 비카드에는 접근매체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비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카드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카드에는 이용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됨에 대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제외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비카드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실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됨에 대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제외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비카드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실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비카드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⑤ 비카드에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충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비카드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비카드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초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비카드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시제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비카드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 ① 비카드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카드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매시각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비카드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비카드에는 불가항연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 비카드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비카드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추심(전자우편주소)을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비카드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비카드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비카드의 전자금융보조업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체에게 한 통지는 비카드에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거래내용 녹음)

- ① 비카드에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녹음된 내용의 정확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비카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기밀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장의 의무)

- ① 비카드에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노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비카드의 관리소속 업무 목적 외인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비카드가 책임을 집니다.
- ③ 비카드에는 관련 법령이 인정한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할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 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에 :serial, Mac address, UUIID 등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비카드에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비카드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

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약관의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비씨카드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비씨카드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비씨카드의 분점이나 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비씨카드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비씨카드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비씨카드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비씨카드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① 제2조(용어의 정의) 1항 제12호, 제13호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3항 제13호, 제14호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